



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급(1~3급)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 안내

「수원시 수도급수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와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등급 1급~3급 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매월 가정용 10㎥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
2014. 9월부터 수도요금을 지원하게 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신청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(장애등급 1급~3급) (중복지원 불가)
- 지원시기 : 신청한 다음달 부터 지원
(2014. 9월 지원요금은 2014. 9. 22까지 신청하셔야 지원됩니다.)
- 신청장소 : 동 주민센터, 구청 사회복지과, 상수도사업소
- 신청방법 : 지원대상자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제출 (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본인확인 필요함)
- 구비서류 : 해당없음
- 유의사항
기존 감면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4. 9월부터 요금감면이 중지되며,
반드시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지원됩니다.
- 문의사항 : ☎1899-3300, 국번없이 121, 228-4927, 228-4920~2

